

[별첨3]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

상병명(상병코드)					
구분	중증도 기준	체표면적 기준			
1	가.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(T20.2)	가. 신체표면의 20-29%를	침범한	화상	
	나. 몸통의 2도 화상(T21.2)	(T31.2)			
	다.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(T22.2)	나. 신체표면의 30-39%를	침범한	화상	
	라.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(T23.2)	(T31.3)			
	마.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(T24.2)	다. 신체표면의 40-49%를	침범한	화상	
	바.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(T25.2)	(T31.4)			
	사.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(T30.2)	라. 신체표면의 50-59%를	침범한	화상	
		(T31.5)			
		마. 신체표면의 60-69%를	침범한	화상	
	(T31.6)				
	바. 신체표면의 70-79%를	침범한	화상		
	(T31.7)				
	사. 신체표면의 80-89%를	침범한	화상		
	(T31.8)				
	아. 신체표면의 90%이상을	침범한	화상		
	(T31.9)				
2	가.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(T20.3)	가. 신체표면의 10-19%를	침범한	화상	
	나. 몸통의 3도 화상(T21.3)	(T31.1)			
	다.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(T22.3)	나. 신체표면의 20-29%를	침범한	화상	
	라.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(T23.3)	(T31.2)			
	마.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(T24.3)	다. 신체표면의 30-39%를	침범한	화상	
	바.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(T25.3)	(T31.3)			
	사.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(T30.3)	라. 신체표면의 40-49%를	침범한	화상	
		(T31.4)			
		마. 신체표면의 50-59%를	침범한	화상	
	(T31.5)				
	바. 신체표면의 60-69%를	침범한	화상		
	(T31.6)				
	사. 신체표면의 70-79%를	침범한	화상		
	(T31.7)				
	아. 신체표면의 80-89%를	침범한	화상		
	(T31.8)				
	자. 신체표면의 90%이상을	침범한	화상		
	(T31.9)				
3	가.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(T20.3)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				
	나. 몸통의 3도 화상(T21.3)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				

	다.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(T23.3) 라.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(T25.3) 마. 눈 및 부속기의 화상 (T26.0~T26.4)	
4	가. 호흡기도의 화상(T27.0~T27.3) 나.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(T28.0~T28.3)	
수술명(수술코드)		
1. 반흔구축성형술(운동제한이 있는 것) (N0241) 2.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(운동제한이 있는 것) (N0242~N0247, NA241~NA243) 3.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(운동제한이 있는 것) (N0249)		